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른 시 행 령 」 일 부 개 정 령 안

방송통신위원회

법 제 처 심 사 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신청)”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등록을 하려는 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허가신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로,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등록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심사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사항별”을 “등록요건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의 발급 등)”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등록”으로,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변경허가”를 “변경등록”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 “허가조건”을 “등록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허가서를”을 “등록증”으로, “허가서가”를 “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을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위치정보서비스, 주요설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변경허가”를 “변경등록”으로, “제2조 제5항·제6항”을 “제2조 제5항·제6항·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위치정보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서비스, 주요설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9조제2항제1호 중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위치정보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서비스, 주요설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제2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해

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14조제2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각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각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의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암호화·방화벽”을 “방화벽”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위치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파기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에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3. 위치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위치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지원업무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실태점검)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은 각 호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여부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여부
3. 사업의 양수·양도, 상속 또는 합병·분할 여부

4. 사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통지 여부
5.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
6.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7. 법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여부
8.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9.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점검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의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

표를 명할 때에는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의4(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제1호 중 “허가, 변경허가”를 “등록,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허가 취소”를 “등록 취소”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5까지 각각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 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 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 청할 수 있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① ----- ----- ----- ----- ----- 등 <u>록을 하려는 자</u> ----- ----- ----- -----.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u>허가</u> 를 받으려는 자는 <u>개인위치정보사 업허가신청서</u> (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등록을</u> <u>하려는 자</u> --- <u>개인위치정보사업</u> <u>등록신청서</u>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u>허가신청</u> 을 받 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③ ----- <u>등록신청</u> ----- ----- ----- ----- -----

야 한다.

④ (생략)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
청서-----

-----등록-----

-----.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등록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심사 세부기준) ①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 6. (생략)

7. 허가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허가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허가 등) ① (생략)

----- 등록

요건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의 발급 등) ① -----

등록 ----- 법 제5조제2항
--- 변경등록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 6. (현행과 같음)

7. 등록조건

② -----
----- 등록을 한 자 -----

등록증 ----- 등록증
인 -----

-----.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
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
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
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2. (생략)

③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
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
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
제6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
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
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변경등록을 하
려는 자----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
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
치정보시스템 중 위치정보서비
스, 주요설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2항----- 변경
등록-----
----- 제2조제5항·
제6항 · 제7항 -----.

④ 법 제5조제2항-----

-----.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 ② (생략)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u>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u>)	1.----- -----(<u>위치정보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서비스, 주요설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한정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u>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④ ----- ----- ----- ----- <u>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u> ----- ---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등) ① ----- ----- ----- ----- -----

업휴업·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 ② (생략)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
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
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
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
정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
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
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
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위치정보
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치정보서비스, 주요설비 등 중
요한 부분의 변경에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
업·폐업 승인 등) ① -----

업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 -----

-----.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신 설 >

하고, 법 제14조제2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각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각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

<신 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2항 -----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 법 제14조제1항·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 4. (생략)

<신설>

<신설>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3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 4. (현행과 같음)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

--- 7일 -----

-----.

1. ~ 4. (생략)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위치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의3(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재

<신 설>

생활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파기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에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
제 업무

3. 위치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
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
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
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위치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
정보 제공·지원업무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
요한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협회의 지
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
는 사업실적서

<신 설>

2. 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4조의2(실태점검)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은 각 호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여부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여부

3. 사업의 양수·양도, 상속 또는 합병·분할 여부

4. 사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통지 여부

5.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

6.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7. 법 제5조제1항제4호, 법 제5

<신 설>

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여부

8.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9.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점검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의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신 설>

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의4(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u>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u>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u>허가, 변경허가</u>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 ----- <u>등록, 변경등록</u> ----- -----
1의2. ~ 7. (생 략)	1의2.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3조에 따른 <u>허가 취소</u> ,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8. ----- <u>등록 취소</u> , -----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기재사항
1. 법인요건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적는다.
가. 등록신청 법인의 명세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2) 구성 주주의 역할 및 책임 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정한다)
나. 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1) 등록신청 법인의 조직 형태 2)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수임 권한
다.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개요	사업의 세부내용을 적는다.
가. 사업 세부내용	1) 제공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2)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3. 시스템의 구성(물적설비)	사업개시 후 3년까지의 시스템 구성계획을 적는다.
가. 소요설비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주요 소요설비 세부 내역
나. 시스템 체계	1) 수집·제공·관리 시스템 설계, 구축 및 배치 개요 2) 구성요소별 기능 및 제원, 구성 요소 간 접속방식 등 시스템 세부사항
다. 시스템 품질보증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수집빈도 등 시스템의 품질보증 사항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사업개시 후 3년까지의 보호조치 계획을 적는다.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별표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재무구조의 적정성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별표 2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

구분	기재사항
1. 법인요건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적는다.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 법인이란 양도법인,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 양수법인,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을 말함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2) 법인의 조직 형태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수임 권한 4)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사업양수 또는 합병·분할된 날부터 3년까지의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적는다.
가. 사업 세부내용	1) 양수, 합병·분할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2) 사업의 개시 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3. 시스템 구성·운영계획(물적 설비)	사업양수 또는 합병·분할 후 3년까지의 시스템 구성·운영 계획을 적는다.
가. 소요 설비	주요 소요 설비 세부 내역
나. 시스템 체계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 내역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3)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정보발송 업무 계획 4)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다. 시스템 품질보증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수집빈도 등 시스템의 품질보증 사항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계획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보호조치 계획을 적는다.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별표 2의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2제1항 관련)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 주요 설비 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정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여부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별표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누적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이거나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를 할 수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자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인가)취소	-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폐지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폐지	-	-
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하지 않은 때 가. 법 제8조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 법 제8조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5.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법 제13조제1항제4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6.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2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사물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	-

[별표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 2)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의 피해규모, 위치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매출액

가. 제15조제1항 전단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나. 제15조제1항 후단의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 제15조제1항 전단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

(3)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4.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누적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제외한다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가중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600	1,200	2,000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600	1,200	2,000
3.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600	1,200	2,000
4.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300	600	1,000
5. 법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300	600	1,000
6.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300	600	1,000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	300	600	1,000
8.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알리지 않	법 제43조제2항제4호	300	600	1,000

은 경우				
9.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5호	300	600	1,000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6호	300	600	1,000
11. 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7호	300	600	1,000
12.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호	600	1,200	2,000
1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7호의2	300	600	1,000
14.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8호	300	600	1,000
15.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8호의2	300	600	1,000
1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5호	600	1,200	2,000
17.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9호	300	600	1,000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8호의3	300	600	1,000
19.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0호	300	600	1,000
20.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1호	300	600	1,000
21.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2호	300	600	1,000

22.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50	300	500
23. 법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3조제2항제13호	300	600	1,000
24. 법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3조제2항제14호	300	600	1,000
2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5호	300	6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연 락 처	(02)2110-1527